

저작권 상담관이 선정한 이달의 상담사례와 용어('26년 9월)

- 여행 브이로그를 찍었는데 카페에서 흘러나오던 노래가 영상에 같이 녹음됐어요. 몇 초밖에 안 나오는데 삭제해야 하나요? -

2026. 10. 29. / 저작권상담팀 ☎ 1800-5455)



본 이미지는 생성형 AI(ChatGPT)를 활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.

□ 9월 주요 상담사례

- 여행 브이로그를 찍었는데 카페에서 흘러나오던 노래가 영상에 같이 녹음됐어요. 몇 초밖에 안 나오는데 삭제해야 하나요?
 - 배경음악이 촬영의 주된 대상에 부수적으로 포함된 경우라면 반드시 해당 부분을 삭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. 다만,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.
 - 음악저작물을 영상에 녹음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복제에 해당하고, 해당 영상을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에 게시하는 것은 전송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권리자의 이용허락이 필요하다.
 - 다만, 저작권법 제35조의3은 사진촬영·녹음·녹화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이 촬영 등의 주된 대상에 부수적으로 포함되는 경우, 이를 복제·배포·공연·전시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.
 - 예를 들어, 여행 중 방문한 카페의 내부 모습이나 일행을 촬영하면서 카페에서 재생되던 음악이 주변 소리와 함께 자연스럽게 녹음된 경우에는 여행 장면이 촬영의 주된 대상이고 음악은 그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포함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.

- 이때 음악이 영상에 몇 초 동안 포함되었는지만으로 이용 가능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. 저작권법에는 ‘5초 이하’, ‘10초 이하’와 같이 일정 시간 이하의 음악을 일률적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다.
- 또한, 음악 자체를 주된 대상으로 삼아 녹음하거나 음악을 감상할 수 있도록 촬영한 경우에는 단순히 부수적으로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다. 특정 노래가 선명하게 들리거나 오래 포함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며, 실제 촬영·이용 형태를 살펴보아야 한다.
- 음악이 촬영의 주된 대상에 부수적으로 포함되었다더라도, 이용된 저작물의 종류와 용도, 이용 목적과 성격 등에 비추어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 이용이 허용되지 않는다.
- 따라서 여행이나 카페의 모습을 촬영하면서 음악이 주변 소리로 함께 녹음되었다면 반드시 삭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, 촬영의 주된 대상에 부수적으로 포함되었는지와 권리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.

■ 저작권법 제35조의3(부수적 복제 등)

사진촬영, 녹음 또는 녹화(이하 이 조에서 "촬영등"이라 한다)를 하는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이 촬영등의 주된 대상에 부수적으로 포함되는 경우에는 이를 복제·배포·공연·전시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. 다만, 그 이용된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, 이용의 목적 및 성격 등에 비추어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□ 저작권 용어 풀이

○ 부수적 복제 등

- ‘부수적 복제 등’은 사진촬영·녹음·녹화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이 촬영 등의 주된 대상에 부수적으로 포함되는 경우 일정한 요건 아래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다.
- 여행 장면을 촬영하면서 카페의 배경음악이 주변 소리로 함께 녹음되거나, 거리 풍경을 촬영하면서 벽화가 배경에 포함되는 경우 등이 해당할 수 있다.
-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복제뿐 아니라 배포·공연·전시 또는 공중송신도 가능하므로, 해당 저작물이 부수적으로 포함된 영상을 온라인에 게시하는 행위에도 적용될 수 있다.
- 다만, 이용된 저작물의 종류와 용도, 이용 목적과 성격 등에 비추어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.

* ‘챗봇’을 통해 저작권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* 챗봇: <https://chatbot.gov.kt-aicc.com/client/GCL-01-C-00000221-0001/chat.html>



한국저작권위원회가 창작한 '저작권 상담관이 선정한 이달의 상담사례와 용어('26년 9월)' 저작물은 '공공누리' 출처표시-상업적 이용금지-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공유마당(<https://gongu.copyright.or.kr/>)의 '한국교육학술정보원, 학교안심 바른돈움 R' 글꼴로 작성